

의안번호	2112480
의 피 인	최승재의원
회 답 일	2021. 09.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안 제12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1항)
 - 피해 소상공인의 범위에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포함
 -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
- 폐업한 소상공인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3조)
 -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¹⁾의 조치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함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Ⅲ. 미첨부 사유

-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시행예정법률”이라 함)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²⁾ 개정안은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손실보상의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파악을 위해서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액, 보상비율, 보상대상자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

$$\circ \text{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0}^{2026} \sum_i \sum_{j=1}^{n_i} [SL_{jt}^{1)} \times \alpha_{it}^{2)}]$$

1) SL = 손실액

이때, i = 제한 조치의 유형

j = 제한 조치를 받은 개별 소상공인 등

2) α 는 보상률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입은 직접·간접적인 손실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그 밖에 시행예정법률 제12조의2제6항3)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7. 7., 일부개정)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7. 7., 일부개정)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의4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손실보상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가 심의

□ 참고로 소상공인 폐업 통계는 기업생멸행정통계(통계청)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신 자료는 2018년 기준('20. 12월 공표)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함. 다만, 2019년 및 2020년 국세청의 사업자 폐업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약 85만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였으며, 2020년에 약 83만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사업자 현황

	총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2019년	8,046,119	1,316,360	922,159	1,002,855	137,591	69,587	7,043,264	1,178,769	852,572
2020년	8,651,833	1,519,284	895,379	1,086,469	153,217	67,547	7,565,364	1,366,067	827,832

주: 국세청 사업자 현황은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음
자료: 국세통계포털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지원사업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및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사업을 시행중임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및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제도는 [참고자료 1] 참조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참고자료]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 (개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

□ 폐업지원 사업내용

- ①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분야 컨설팅 지원
- ②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 (최대 200만원)
 - 점포철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차인으로서, 지원 신청·접수 시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
- ③ (법률 자문)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 상담, 재기사업 안내 및 법률자문 지원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용문제 등으로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빠르게 해소

2.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 여건 마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8.16일 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다만,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 유흥·도박, 보험업, 약국, 성인용게임장, 복권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 (지원금액) 폐업신고 소상공인에게 50만원 현금 지급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비용추계과
과장	이현경
추계세제분석관	김계남
연락처	02-6788-4650
	godself@assembly.go.kr
